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4
----------	-----

제출연월일 : 2022. 4. 13.

제출자 : 남양주시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여 법률 합치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 수수료는 상위법의 수수료를 따르도록 명시 (안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규정 적용
나. 수수료 징수 방법은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와 일치 (안 제5조)

다. 조 제목 변경 및 수수료 면제기준 정비 (안 제7조)

- 1) 조 제목을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수수료의 면제 등”으로 변경
- 2)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조건 및 법령 근거 구체적 명시

라. 수수료 요율 정비 (안 별표 1)

- 1)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대부신청 관련 수수료 삭제
- 2)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수수료 신설 및 개정
- 3)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사무가 없는 경우 등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마. 그 밖의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 정리

3. 개정조례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붙임 1

나.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붙임 2

다. 관계법령 : 붙임 3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증명과 인·허가”를 “증명, 인가·허가”로, “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을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증명등”을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항 중 “1면”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합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의 제목“(수수료의 감면 등)”을“(수수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감면사유”를 “면제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별표 2”를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및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4호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리·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징수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징수과장 김영미
	팀장 직위·성명	세외수입팀장 남상명
	담당자 성명·전화	서혜진 (031-590-2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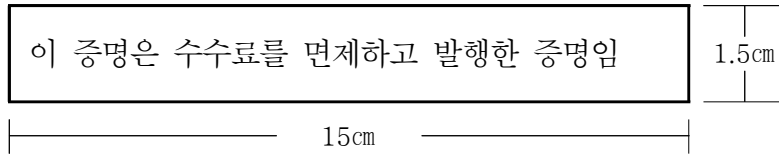
각종 증명등의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원	
(2)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	1통	2,000원	
2. 도시계획·도시개발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1,100원	
(2)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100원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1,100원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100원	
(5) 체비지 분할 신청	1필지	1,100원	
(6) 토지 대금 완납증명	1필지	1,100원	
3.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건	1,400원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1건	1,4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1,4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건	1,400원	
4.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증명			
(1)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원	
(2) 대지권 등록부	1필지	400원	
(3) 건축물대장	1건	4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700원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700원	
(6)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을)	1건	400원	
(7) 농지원부	1건	900원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400원	
2. 농림수산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4) 낚시터업 변경 허가(등록) 신청	1건	5,000원	
(5)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5,000원	
3. 건설관계			
(1)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2,700원	
(2)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2,700원	
(3)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3,300원	
(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1,400원	
4. 보건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1건	2,000원	
(2)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1건	40,000원	
(3)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1건	20,000원	

■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확인 고무인 (제7조제3항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u>증명과 인·허가</u>, 그 밖의 <u>신고 또는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u>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증명, 인가·허가</u>----- <u>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u>----- ----- ----- <u>관한</u> ----- ----- -----.</p>
<p>제2조(적용) <u>증명등</u>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남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u>증명, 인가·허가</u>, 그 밖의 <u>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u>---- 따라 ----.</p>
<p>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u>증명등의 수수료</u>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u>규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u>는 별표 1과 같다.</p>	<p>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u>증명등의 수수료</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p>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증명등은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한다.

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

③-----

---- 합한 금액-----.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기준) ① (생략)

②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면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남양주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증명) 중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증명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표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표
5. 각각 해당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수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및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4호는 제외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리·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

행자와 그 유족(선순위 유족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정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9.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된 증명등을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정한다)

② -----

-----.

-- 면제사유-----
-----.

③ 제1항 및 제2항-----

-- 수입증지 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산업경제국 징수과장 김영미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징수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16)

1. 징수과-4191(2022.02.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아 동 과 장

주무관	권필순	팀장	배진위	여성아동과 2022. 2. 23.	장	이은경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5427	(2022. 2. 23.)	접수	징수과-4299	(2022. 2. 23.)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다산2동, 남양주시 청 복지국)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491	팩스번호	031-590-2269	/ kwonps@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4., 2021. 12. 16.>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6.>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1801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2021. 6. 23.,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5. 2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개정 2021. 6. 23.>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 름·슬라이 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남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시행 2014. 8. 1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190호, 2014. 8. 14.,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남양주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이하 “민원처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민원처리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

- ②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 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1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9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42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1. 4. 12., 2014. 1. 21., 2018. 1. 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 1. 21.,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1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364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5.] [보건복지부령 제871호, 2022. 3. 15., 일부개정]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일부개정]

제7조(수수료) ① 법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7.] [법무부령 제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제8조(수수료)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열람에 관한 정보제공 수수료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1.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5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15조(수수료) ① 법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4. 1.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1. 8. 27.>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1필지당	500원	
2) 임야대장	1필지당	500원	
3) 지적도	가로21cm, 세로30cm	700원	
4) 임야도	가로21cm, 세로30cm	700원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500원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34조(수수료) ① 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2. 11. 16., 2021. 7. 12.>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4.>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36호 : 1건당 800원으로 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령 제299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 [별지 제49호서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35호 : 1건당 800원(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으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56조(수수료액) ① 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 2. 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개정 2019. 12. 9.>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납부자	금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나. 등록원부의 열람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93조(수수료 등)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 3. 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21. 2. 16.>

수수료 등(제93조 관련)

종 목	금 액
4.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갑, 을부) 또는 초본(갑부)의 발급·열람 신청	등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초본 발급 1건에 대하여 500원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7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10.>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11.] [대통령령 제23848호, 2012. 6. 12., 일부개정]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입목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목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2.>

□ 입목등록원부 및 입목등록(변경)신청서 서식 고시

[시행 2017. 5. 30.] [산림청고시 제2017-57호, 2017. 5. 30., 일부개정]

제3조(등록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등록(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서식 2] 입목등록(신규, 변경) 신청서 : 수수료 없음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타법개정]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6. 25., 2020. 2. 21.>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6. 25.>

※ [별지 제1호서식]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서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별지 제2호서식]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서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서식] 지위승계 신고서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사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허가신청서의 서식 등) 「사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사도(개설,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 수수료 없음

□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 18., 2006. 5. 12., 2008. 12. 11.>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 12. 11.>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14.>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홍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4. 18.>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0. 5. 1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744호, 2020. 5. 14., 일부개정]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6.11., 2013.05.14>

※ [별표 1] 건축허가 등 수수료 : 200제곱미터 미만 - (기타) 9천원,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5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영 제97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11. 6., 2008. 3. 14., 2008. 9. 29., 2011. 4. 11., 2012. 4. 13., 2013. 3. 23., 2022. 1. 21.>

※ [별지 제9호서식]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수수료 없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부 칙] <대통령령 제20374호, 2007. 11. 13.>

제2조 (관광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기타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기타유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공중위생법 시행령** [시행 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4호, 1998. 8. 11., 타법개정]

제3조 (위생접객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0·4·14, 1996·6·29, 1997·2·24>

3. 유기장업

가. 컴퓨터게임장업 : 전자유기기구 또는 체련용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유기장업

나. 종합유원시설업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위락지 등에서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스포츠·관람형 유기기구를 각2종이상 설치·운영하는 영업.

다. 기타유기장업 : 주행식유기기구, 고정식유기기구, 스포츠·관람형유기기구,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 다만,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시행 1997. 12. 17.] [보건복지부령 제56호, 1997. 12. 17., 일부개정]

제4조 (신고대상 기타유기장업) 공중위생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제4조제3호 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유기기구중 1종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스포츠형유기기구중 미니볼링·미니농구·공던지기 또는 로테오타기
2. 관람형유기기구중 도깨비집·거울집·투시경 또는 좌석고정영상시설
3. 주행식·고정식유기기구중 시속 5킬로미터이하의 밧데리카·미니자동차·미니기차 또는 고정형라이더류(설치범위가 반지름 3미터이내의 것에 한한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다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 · 면봉 · 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제조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위생용품수입업”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위생물수건처리업”이란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이하 “위생처리”라 한다)하여 포장·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0.]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타법개정]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9. 30.>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744호, 2020. 6. 2., 일부개정]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제33조(개설 등)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수료

- (개설신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변경신고) 없음(개설장소 이전신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 (제135호) 개설신고 : **1건당 40,000원**으로 규정
- (제137호)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 **1건당 20,000원**으로 규정